##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210

발의연월일 : 2022. 4. 12.

발 의 자:전용기·이병훈·장철민

박광온 • 전재수 • 김영배

김두관 · 윤준병 · 김병기

오영환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,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,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 의료적 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재해 인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음.

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4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209호) 및「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20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것임.

법률 제 호

##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3조의2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5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	제4조(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	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	
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	
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	
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	
상 재해로 본다. 다만, 공무와	
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	
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	
로 보지 아니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공무상 질병: 다음 각 목의	2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라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3조
	의2 또는 「지방공무원법
	_ 제55조의2에 따른 직장
	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
	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
	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<u>라.</u> (생 략)	<u>마.</u> (현행 라목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